

「卜筮通義」에 담긴 정약용의 ‘卜筮’에 관한 인식*

이난숙**

주제분류 한국철학

주요어 정약용(丁若鏞), 역학서언(易學緒言), 복서통의(卜筮通義), 복서(卜筮), 복서관(卜筮觀)

요약문

본고는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지은 『역학서언(易學緒言)』·「복서통의(卜筮通義)」에 담겨 있는 다산(茶山)의 고대의 ‘복(卜)과 서(筮)’에 관한 인식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복서통의」는 총 8가지 논제인 사관서례(士冠筮禮), 사상서례(士喪筮禮), 표기복서지의(表記卜筮之義), 곡례복서지의(曲禮卜筮之義), 소의복서지의(少儀卜筮之義), 복서총의(卜筮總義), 영시사(令蓍辭), 복조요(卜兆繇)로 구성되어 있다.

정약용은 『의례(儀禮)』, 『예기(禮記)』에 있는 ‘복과 서’와 관련된 자료 및 『춘추좌전(春秋左傳)』, 『주례(周禮)』, 『국어(國語)』, 『이아(爾雅)』, 『시경(詩經)』, 『서경(書經)』, 『주역본의(周易本義)』를 망라해 복서의 의미를 논구하였다. 『의례』의 「관례(冠禮)」, 「상례(喪禮)」편에 있는 귀복점[龜卜占, 卜], 시초점[蓍草占, 筮]의 예법과 의식절차를 논했고, 『예기』의 「표기(表記)」, 「곡례(曲禮)」, 「소의(少儀)」 3편에 있는 ‘복서의 의미’를 논하였다. 더불어 역사적으로 행해진 복례(卜例)와 서례(筮例)에 대해 「영시사」와 「복조요」에서 분석하였으며, 위의 내용을 토대로 복서의 총체적 의미를 해명하였다.

* 이 논문은 2018년 7월 9일 몽골 울란바타르대학교에서 개최된 한중철학회, 조선대학교 우리철학연구소, 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논문이다.

**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정약용은 『의례』에 담긴 복서의 의미를 1. 청명(聽命) 2. 통치 3. 미래에
측 및 가치판단과 관련되었다고 했다. 그는 첫째, 복서는 청명을 하는 예
식이다. 「表記」, 둘째, 복서는 성왕(聖王)이 백성 앞에서 천명을 품부 받
아 활용한 통치의 의미가 있다. 「曲禮」 셋째, 복서는 두 번 묻지 않고 옳
은 일에 대해서만 행했다(「少儀」)고 하였다.

연구 결과, 정약용이 가진 ‘복과 서’에 관한 인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신(神)을 섬기지 않고 일을 당해서 귀복점과 시초점을 시행하는
것은 하늘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둘째, 사술(邪術)에 빠진 복서는 의미가
없다. 셋째, 올바른[義]이란 천리를 헤아려 합하는 것이다. 만일 위의 조건
을 갖추지 못하면 복서는 폐지되어야 한다. 넷째, 『예기』·「왕제(王制)」에
있는 ‘복서의 의미’가 올바른 해석이라고 했다. 또 정약용은 『주역』의 역
사(易詞)는 450개를 사용하지만, 삼조(三兆: 玉兆, 瓦兆, 原兆)의 조사(兆
詞)는 1200개로 약 3배 많다. 이들 복조(卜兆)의 책들이 진(秦)·한(漢) 시
기에 사라졌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정약용의 「복서통의」는 『주역』이 본래 복서의 책이었음을 인식하고,
‘복’과 ‘서’에 관한 원형적 의미와 복서의 다양한 사례를 고증함으로써 총
체적으로 복서의 의미를 규명한 역학평론이라는 의미가 크다.

I. 서론

본고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역학서언(易學緒言)』 가운데 「복서통의(卜筮通義)」¹⁾에 담긴 그의 ‘복(卜)과 서(筮)에 관한 인식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복서통의」는 『역학서언』의 총 21편 가운데 18번째에 수록된 역학비평론이다. 「복서통의」의 내용은 8가지 논제이며, 사관서례(士冠筮禮), 사상서례(士喪筮禮), 표기복서지의(表記卜筮之義), 곡례복서지의(曲禮卜筮之義), 소의복서지의(少儀卜筮之義), 복서총의(卜筮總義), 영시사(令蓍辭), 복조요(卜兆繇)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고대에 행해진 귀복점[龜卜占, 卜]과 시초점[蓍草占, 筮]의 예법과 의식절차 및 그 의미를 논구하였다.

주지하듯이 고대의 ‘복과 서’는 서로 다른 형식을 가진 점법(占法)이다. 갑골문에 ‘복(卜)’ 자는 거북이의 등이나 배딱지, 소의 뼈나 동물의 뼈 등 귀갑(龜甲)을 태운 후 나타난 갈라진 틈(금)의 무늬를 본뜬 글자이다. 따라서 ‘복’은 거북이를 태운 뒤 나타난 복조(卜兆)라는 균열 무늬를 해석해 그 길흉을 추단(推斷)하는 점법에 속한다. 이를 거북점, 귀복점(龜卜占), 갑골점(胛骨占), 귀갑점(龜甲占)이라고 부른다. 반면 서(筮)는 시초(蓍草) 혹은 서죽(筮竹)을 활용하고 설시(揲蓍)의 방법을 쓴다. ‘서’는 처음 대나무를 사용했고 후에 시초를 사용했다고 전한다. 『설문』에 보면, ‘서는 『주역』으로 점칠 때 사용한 시초이다.’라고 하였다. 서(筮) 자는 죽

1) 『역학서언』은 정약용이 한대(漢代)부터 청대(清代)까지의 중국역학 2천년사를 비판적으로 연구한 역학문헌이다. 중국철학사에서 영향력이 지대했던 역학거장(巨匠)과 창의적인 역학을 정립했던 중국유학자들, 그리고 그들이 지은 역학문헌, 역학이론, 역학사상을 전문적으로 논평하였다. 『역학서언』의 구성은 중국역학비평론 17편, 역학문답론 2편, 역학서간문 1편, 卜筮에 관련 역학평론 1편이며, 총 21편은 1821년에 최종 완성되었다. 이 가운데 「복서통의」는 역학이 학문적으로 정립된 이전에 행한 卜筮를 논구한 특징이 있는 역학평론이다.

(竹)과 무(巫)로 구성되었는데, 고대에 무당이 대나무를 손에 쥐고 짐을 쳤다는 것에서 유래한 글자이다. 이처럼 ‘서’는 ‘복’과는 달리 특별히 의미가 부여된 수(數)를 활용하고, 괘를 얻는 실시법을 활용한 점법이다. 이러한 형식을 지닌 ‘복과 서’는 고대에 천명(天命)을 청(請)하는 정성스러운 예식이란 의미가 있었다.

정약용은 『의례(儀禮)』와 『예기(禮記)』에 기록된 ‘복서’ 관련 자료를 발췌하였고, 또 『춘추좌전(春秋左傳)』, 『주례(周禮)』, 『국어(國語)』, 『이아(爾雅)』, 『시경(詩經)』, 『서경(書經)』, 『주역본의(周易本義)』, 장형(張衡)의 「사현부(思玄賦)」 등을 망라해 복서가 가진 의미를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례』에 있는 「관례(冠禮)」와 「상례(喪禮)」편에서 귀복점과 시초점의 예법 및 의식 절차를 발췌해 논하였고, 『예기』에 있는 「표기(表記)」, 「곡례(曲禮)」, 「소의(少儀)」 3편에서는 ‘복서지의(卜筮之義)’를 고찰하였다. 더불어 「영시사」와 「복조요」를 따로 분류해 중국역사에서 행해진 복례(卜例)와 서례(筮例)의 경험사례를 분석, 분류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정약용은 복서가 가진 총체적 의미를 자신의 관점으로 해명하려 하였다.

따라서 「복서통의」는 『주역』이 성립된 이후, 역학(易學)이란 학문체제로 정립된 학설을 논구했다기보다 점(占)의 원형적 형식인 ‘복과 서’에 관한 예법과 의식절차 및 사례, 그리고 복서의 의미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약용 역학에서 그의 복서관(卜筮觀)을 연구하는 중요한 역학비평론이라는 의미가 있다. 정약용은 중국의 상수역학, 의리역학에 모두 박학심경(博學深境)하였다. 그는 왜 복서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했을까? 연구결과 정약용은 ‘복서’의 총체적 의미를 어떻게 규명하였을까?

정약용의 복서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니, 그의 복서에 관한 견해를 언급한 3편이 연구논문이 보인다.²⁾ 주로 복서와 관련하여 정약용의

2) 정약용의 복서관을 언급했던 선행연구 논문은 3편을 들 수 있다. ①김장태, 「정약용의 역해석에서 복서의 방법과 활용」, 『다산학』 제8호, 2006. ②방인, 「다산역의

「시괘전(著卦傳)」, 「역론(易論)」, 그리고 「복서통의」의 일부분 문장과 다산의 다른 글에서 발췌된 내용이 중심이었다. 「복서통의」는 아직 번역되지 않은 역학비평론이기에 위 연구논문에서 언급된 내용도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 보인다. 따라서 「복서통의」 전문(全文)을 번역함과 동시에 「복서통의」에 담긴 정약용의 ‘복과 서에 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해명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 정약용이 논구한 방식을 따라서 『의례』에 있는 「사관례」와 「사상례」를 인용해 관례와 상례에서 행해진 귀복점과 시초점의 예법과 의식절차를 논한 「사관서례」와 「사상서례」를 살펴보고, 『예기』의 「표기」, 「곡례」, 「소의」 3편에서 발췌한 ‘복서의 의미’와 정약용이 이들 기록에 담긴 복서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고찰한다. 그리고 「영지사」와 「복조요」장에서 중국역학에 행해진 복례(卜例)와 서례(序例)는 어떤 문헌 고증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복서총의(卜筮總義)」에서 정약용이 ‘복서의 총체적 의미’를 어떻게 규명하였는지 해명한다.

본 연구에서 ‘복(卜)’은 거복점, 귀복점, 갑골점, 귀갑점 가운데 귀복점(龜卜占)으로, ‘서’는 시초점(著草占)으로 통일해 서술한다. 「복서통의」 연구로서 정약용의 복서에 관한 인식을 해명함과 동시에 정약용 역학의 정체성 및 그의 역학사상의 근거를 파악하는 토대 연구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II. 귀복점[卜]과 시초점[筮]의 의식과 예법

‘복(卜)과 서(筮)’는 행하는 예식의 방법이 달랐고, 점의 결과를 해석하

천명관-請命, 稟命 그리고 順命, 『다산학』 제26호, 2015. ③신원봉, 「정약용의 점서적 역학관 연구-주희와 모기령 비교」, 『다산학』 제25호, 2014.이며, 3편의 연구 논문 가운데 「복서통의」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는 주사(繇辭)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귀갑(龜甲)을 태워 갈라진 복조(卜兆)의 무늬를 해석하는 ‘복’은 우연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복조의 무늬를 고대인은 천명(天命)과 관련지어 해석하여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점의 길흉의 결과를 존중하여 행위나 마음가짐을 추단(推斷)하게 할 수 있는 ‘복’의 예식을 신성시하였다.

『주역』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주역』 효사와는 다른 주사(繇辭)로 ‘복조’를 해석하였다. 사마천(司馬遷, B.C.145~미상)은 『사기(史記)』·「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에서 ‘하·은·주 삼대는 거복으로 점치는 방법이 같지 않았고, 사방의 오랑캐들도 제각각 다른 방법으로 점을 쳤다.’³⁾고 하였다. 「귀책열전(龜策列傳)」에는 ‘만(蠻)·이(夷)·저(氐)·강(羌) 등 사방의 오랑캐들은 비록 군신의 차례는 없었으나 의혹을 해결하는 점은 있었다. 혹은 쇠붙이와 돌로, 혹은 풀과 나무로 점을 쳤으니 나라마다 풍속은 같지 않았다.’⁴⁾고도 하였다. 이처럼 고대 중국에서 행한 ‘복’은 다양한 방법이 존재했고, 그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점법이 변화했던 것이다.

서(筮)의 경우는 시초나 서죽을 활용하며 설시(揲蓍)의 방법을 활용하였으니, 도구가 또한 달라졌다. 『설문』에 의하면, ‘서는 『주역』으로 점칠 때 사용한 시초이다.’라고 했다. ‘서’는 복조와 달리 의미가 부여된 수(數)를 활용한다. 설시법을 통해서 효(爻)와 괘(卦)를 얻고, 『주역』에 기록된 괘효사로서 점의 결과를 해석하였다. 『주역』에 있는 의미가 부여된 수를 역수(易數)라 부른다. 따라서 고대인이 자연 만물을 수리적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기호, 상징, 문자로서 기록하였음과 『주역』 해석에서 역수가 중요한 의미가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정약용은 역수(易數)와 역상(易象), 그리고 역리(易理)에 모두 정통하였다. 그것은 역수, 역상, 역리, 역도가 『주역』의 경의(經義)를 정확히 파악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사(辭)·변(變)·상(象)·점

3) 『史記』·「太史公自序」.

4) 고희·이경자·용조조 지음, 김상섭 편역, 「주역점의 이해」, 지호, 2009, 13쪽.

(占)이라는 『주역』의 4대 구성요소를 세분해 연구하고, 성인의 뜻을 온전히 해석하고자 했다. 더불어 『주역』의 근원이 되는 ‘복과 서’의 의미 또한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점의 원형(原形)과 그 역사적 해석사례를 분석해 「복서통의」에 정리함으로써 역학의 실마리[緒]를 규명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한다.

고대에 행해진 ‘복과 서’의 예법이 엄격하게 달랐는데, 실제 사례는 어떠했을까? 먼저 사관서례(士冠筮禮)를 살펴보자. 관례는 성인이 되는 의식이다. 서례(筮禮)를 행할 때 사당문에서 행했고, 주인과 명을 받는 사람 모두 격조 있는 복식까지 갖추었다. 『의례』·「사관례(士冠禮)」편에 수록된 시초점의 구체적인 절차와 예법은 다음과 같다.

사당문에서 시초점을 친다. 【鄭玄 註: 아버지의 사당을 이른다. 당(堂)에서 하지 않음은 시초의 신령함이 사당의 신(神)으로 말미암음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주인은 현관(玄冠: 검은색 관모)⁵⁾, 조복(朝服: 조례 때 관원의 의복), 치대(緇帶: 검은 비단으로 만든 띠)와 소필(素鞵: 흰 가죽으로 만든 무릎가리개)을 갖추고, 사당문의 동쪽에 서쪽을 보고 선다. 유사⁶⁾는 주인과 같은 복장을 하고 사당 문의 서쪽에 서서 동쪽을 보고 북쪽을 위로 하여 자리한다. 시초와 점치는 자리, 뿔은 패는 서쪽 방에 갖추어 차려둔다. 【筮는 시초를 이른다. 所卦란 땅에 획을 그어 기록한 효이다.】 사당문 가운데 자리를 넓게 펴고 문에 세운 기둥의 서쪽 문지방의 밖에서 서쪽을 본다. 시초점을 치는 사람은 책[策: 점대]를 잡고, 점대통에서 점대를 뽑아 올려 그것을 함께 잡고서 나아가 주인에게 명을 받는다. 【시초점 치는 사람은 세 가지의 ‘역’을 주관하는 자이다. 鬮는 점대를 담은 통이다.】 주관하는 사람은 오른쪽에서 조금 물러나 명을 알린다. 【주인을 도와 시초점 치는 까닭을 알린다.】 시초점 치는 사람은 허락을 받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곧 자리에 앉아 서쪽을 본다. 패는 왼쪽에 있다. 【패는 주인이 땅에 획을 그어 효를 표시한다.】 시초점을 마치면 패를 설명한 글을 집어서 주인에게 보인다. 주인은 보이는 것을 받아보고 그것을 돌려준다. 시초점 치는 사람은 함

-
- 5) 玄冠은 장례나 제사가 있을 때 쓰는 검은 비단으로 만든 관이다. 『논어』에 공자는 현관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6) 有司는 제사의 일을 맡아 보는 사람으로, 주인의 일을 맡아 업무를 담당하였다.

계 동쪽을 보고 려점(旅占)을 마치고 나서 나아가 길함을 고한다. 【遷은 무리와 더불어 함께 점치는 것이다.】 만일 불길하면 원일(遠日: 10일 이후)에 시초점을 치되, 처음의 의식과 같게 한다. 시초점 치는 자리를 정리한다. 종인(宗人: 촌수가 먼 일가친척)이 일이 끝났음을 고한다. ○전기(前期) 3일에 빈객을 가리는 시초점은 택일의 의례와 동일하게 한다.⁸⁾

「복서통의」에 기록된 서법(筮法), 서례(筮禮)의 의식절차와 예법은 위와 같다. ‘서례’를 보면, ‘서(筮)’를 행하는 사람의 의복, 복서의 절차와 방법,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 의식에서 서 있는 위치와 방향 등이 매우 구체적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서례를 행할 때의 의복은 검은 색 관모인 현관(玄冠)이고, 조례 때의 관원의 복장인 조복(朝服)을 갖추고 검은 비단으로 만든 치대(緇帶)와 흰가죽으로 만든 무릎가리개 소필(素鞞) 등을 갖추어 예식을 행했다. 이처럼 정성스러운 예식인 서례는 주인과 유사의 복식뿐만 아니라, 위치 잡는 법, 실시하는 의식절차를 엄격하게 정하여 치렀던 것이다. 주인과 서례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들인 정성은 ‘서(筮)’가 중요한 의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관례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먼저 ‘려점’으로, 세 사람이

- 7) 旅占은 세 사람이 길흉을 점치는 것으로, 장유(長幼)의 순서에 따랐다고 전한다. 세 사람이 점을 친 결과는 같은 두 사람의 말을 따랐다. 『儀禮』·「士喪禮」에는 “反之東面旅占”을 말했고, 鄭玄은 “反與其屬共占之”라고 주석하였다. 일설에는 ‘依其長幼之序而占之’라고 했다. 淸의 王引之는 『經義述聞』·「儀禮」에서 “려는 순서이다. 려점은 3명이 장유의 순서에 따라 친 점을 말한다.(旅, 序也. 旅占, 謂占者三人順其長幼之序以占也)”고 하였다.
- 8) 『정본 여유당전서』제17권, 『역학서언』·「복서통의」 278쪽 “筮于廟門。【謂禰廟. 不於堂者, 嫌著之靈由廟神】 主人玄冠, 朝服, 緇帶, 素鞞, 卽位于門東, 西面. 有司如主人服, 卽位于西方, 東面, 北上. 筮與席, 所卦者, 具饌于西塾. 【筮, 謂著也. 所卦者, 所以畫地記爻】 布席于門中, 闔西闕外, 西面. 筮人執筮, 抽上鞞. 兼執之, 進受命於主人. 【筮人, 主三《易》者. 鞞, 藏筮之器】 宰自右少退, 贊命. 【佐主人, 告所以筮】 筮人許諾, 右還, 卽席坐, 西面. 卦者在左. 【卦者, 主畫地, 識爻者也】 卒筮. 書卦, 執以示主人. 主人受眡, 反之. 筮人還, 東面旅占, 卒, 進告吉. 【還與其屬共占之】 若不吉, 則筮遠日, 如初儀. 徹筮席. 宗人告事畢. ○前期三日, 筮賓, 如求日之儀.”(이후 『定本 與猶堂全書』제 17권, 『易學緒言』·「卜筮通義」는 「복서통의」로 표기한다.)

시초점을 행하고, 불길한 경우에 재례(再禮)를 행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시초점은 한번만 시행하며 다시 점을 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이에 대해서 “고대엔 관례, 혼례, 장례, 제례[冠·昏·葬·祭] 모두 길일을 점치고 빈객을 점치는 서례(筮禮)를 행했다. 다만 장례에는 빈객을 점치지 않았다. 날씨, 빈객, 뜻밖의 우환도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웃어른에게 여쭙어 본 후에 의식을 행하였다. 세 사람이 려점(旅占)을 쳤는데, 이것은 괘상(卦象)의 해석이 통일되지 않으면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였다”⁹⁾라고 설명하였다.

서례의 명(命)은 흠향(歆饗)처럼 받들었다. 만일 불길하면 10일 이후에 다시 주인과 유사가 현관, 조복, 치대와 소필 등 복식을 갖추고 동일한 의례 절차를 통해서 시초점을 시행했고¹⁰⁾, 서(筮)는 땅에 획을 그어 괘를 기록했다고도 전한다. 그리고 「사혼례(士昏禮)」에는 혼례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시초점보다 귀복점을 행했다고도 하였다.¹¹⁾

다음은 사상서례(士喪筮禮)를 살펴본다. 사상서례는 죽은 이의 뒷자리를 정하는 시초점이다. 『의례』 「사상례(士喪禮)」편을 보면 상례를 치를 때 행하는 시초점의 의식 절차와 예법이 자세하다.

묘(墓) 뒷자리를 정하는 시초점은 묘지의 관장하는 총인이 운영한다.
시초점을 명받으려는 사람은 주인의 오른쪽에 앉는다. 시초점 치는 사람

- 9) 「복서통의」 278쪽. “古者冠昏葬祭, 皆筮日筮賓. 【葬無賓】 蓋日之晴雨, 賓之病寧, 皆不可豫知, 而抑意外之患, 不可虞度, 故稟而后行之, 亦受命如嚮之義也. 旅占者, 三人占其吉凶也. 三人占, 從二人之言, 爲卦象難通也.”
- 10) 「복서통의」 278쪽. “古者冠昏葬祭, 皆筮日筮賓. 【葬無賓】 蓋日之晴雨, 賓之病寧, 皆不可豫知, 而抑意外之患, 不可虞度, 故稟而后行之, 亦受命如嚮之義也. 旅占者, 三人占其吉凶也. 三人占, 從二人之言, 爲卦象難通也. 今人不可卜筮, 又不可就陰陽家擇日, 但當取裁於尊長也.”
- 11) 「복서통의」 279쪽. “案「士昏禮」.....昏禮加重, 卜而不筮, 或, 或卜或筮, 而經文略之也.”

은 동쪽을 보고 집대통에서 뿔아 올려 함께 그것을 잡고, 남쪽을 보면서 명을 받는다. 명하며 말하길 “어머니를 여원¹²⁾ 모씨는 그 아버지 모보(某甫)를 위해 묘 자리를 정하는 점을 친다. 이에 무덤을 헤아리니, 묘터가 후일에 어려움은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였다. 시초점을 치는 사람이 승낙하면 명을 설명하지 않은 채 오른쪽으로 돌아서 북쪽을 보고 가운데를 가리키며 받들어 시초점을 쳤다. 패는 왼쪽에 놓는다. 시초점이 끝나면 패를 집어 시초점을 명한 사람에게 보인다. 시초점을 명한 사람은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돌려주고 동쪽을 본다. 려점이 끝나면 나아가 시초점을 명한 사람과 주인에게 “그것을 점치고 ‘따르라’고 말한다.”고 고하였다.¹³⁾

묘지를 관장하는 사람은 총인(冢人)이라 한다. 상을 당한 사람이 뒷자리를 정하려 행한 서례(筮禮)에는 주관자, 참석자, 시초의 방법, 언사(言詞), 패를 놓는 위치, 려점과 순명(順命)의 말씀 등의 법식이 규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설시로서 명(命) 받으려는 사람은 주인 가까이에서 시초점의 예법과 절차를 정중히 따랐다고 했다.

시초점을 행할지, 귀복점을 행할 것인지는 점을 치는 목적에 따라 따로 정해져 있었다. 『예기』·「상복소기(喪服小記)」에 의하면, “숙련되면 시초점으로 택일하고, 시초점으로 시동(尸童)을 선택하였다.”고 한다. 상스러운 경우도 동일하였다. 「잡기(雜記)」편에는 “대부는 묘 자리와 장례일을 귀복점으로 쳤고, 유사(有司)는 삼베옷을 입고 점치는 사람은 가죽 고깔을 썼다. 마땅히 시초점은 사관(士官)이 흰 깃으로 만든 관을 쓰고 긴 옷을 입는다. 점치는 사람은 조복(朝服: 예복)을 입는다.”고도 하였다. “대부의 상(喪)은 방계의 사람[小宗人]이 귀갑의 명을 받고, 귀복점 치는

12) 哀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상주 자신을 칭하는 말이며, 孤哀子, 孤子라고도 한다.

13) 「복서통의」 279쪽. “筮宅, 冢人營之. 命筮者, 在主人之右. 筮者東面, 抽上韉, 兼執之. 南面受命. 命曰, “哀子某, 爲其父某甫筮宅. 度茲幽宅, 兆基無有後艱?” 筮人許諾, 不述命, 右還, 北面, 指中封而筮. 卦者在左. 卒筮, 執卦以示命筮者. 命筮者, 受視, 反之, 東面. 旅占卒, 進告于命筮者與主人, “占之曰從.””

사람은 귀갑을 만든다.”¹⁴⁾고 했다. 정리하면 대부의 뒷자리와 장례일은 귀복점을 행하고, 택일과 시동의 선택은 시초점을 행하였다. 즉 관직의 여부와 점치는 사람의 숙련도 등 다양한 규정 방식에 따라서 시초점과 귀복점을 정하여 시행되었다.

III. 『예기』에 담긴 복서(卜筮)의 의미

정약용은 『예기』의 「표기」, 「곡례」, 「소의」의 3편에 담긴 복서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발췌해 「복서통의」에서 논했다. 『예기』는 『의례』, 『주례』와 더불어 삼례(三禮)에 속하고, 『예기』 49편 모두는 의례의 해설뿐만 아니라 음악, 정치, 학문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여 예의 근본정신을 논하고 있다. 『의례』는 예의 근본, 『주례』는 예의 말단, 『예기』는 의례의 기문(記文)을 기록하고 있다.

정약용은 『예기』 가운데 3편에서 다음 내용을 발췌했는데, 그가 각 편에서 관심을 둔 것을 보면, 「표기」¹⁵⁾편에서는 복서를 행한 내용과 의미, 그리고 천자, 제후, 군자 등이 복서를 어기지 않고 받들었다는 점과 「곡례」편에서는 복서의 법식과 예절에 대한 권위와 의미가 절대적임을 주목

14) 「복서통의」 279쪽. 「喪服小記」, “練筮日筮尸.” 祥亦然也. 又「雜記」曰 “大夫卜宅與葬日, 有司麻衣, 占者皮弁. 如筮, 則史練冠長衣. 占者朝服.” 又曰: “大夫之喪, 小宗人命龜, 卜人作龜.”

15) 『禮記』 「表記」 편은 공자가 仁에 대해 말한 것이 가장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대표적이라는 뜻에서 表記라고 하였다. 「표기」 편은 8支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지는 머리장에서 9장까지로 敬에 대한 의리를 자세히 말했다. 제2지는 10장에서 16장까지이며, 仁義報 3가지의 도리를 자세히 말했다. 제3지는 19장에서 23장까지로 ‘인’에 대해서만 말했다. 제4지는 24장에서 27장까지로 義를 말하였다. 제5지는 28장에서 33장까지로 ‘凱弟君子’의 의리를 밝혔다. 제6지는 34장에서 35장까지로 임금 섬기는 도리를 밝혔다. 제7지는 46장에서 50장까지로 언행의 요점을 말했으며, 제8지는 51장에서 55장까지로 복서의 소중함을 말하였다.(이상옥 편역, 『예기』下, 명문당, 2014, 1339쪽.)

하였다. 「소의」편에서는 ‘귀복점이나 시초점을 행할 때의 마음가짐과 청명(聽命) 하는 방법을 발취해 논하였다.

정약용이 「표기」편에서 발취해 인용한 글은 다음과 같다.

공자가 말하였다. “옛날 삼대의 명왕(明王)들은 모두 천지의 신명을 섬겼고, 귀복점과 시초점을 사용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감히 그 사사롭고 더러운 마음으로는 상제를 섬기지 않았다. 이로써 일월을 범하지 않았으며¹⁶⁾, 귀복점과 시초점을 위반하지 않았다. 큰일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고 작은 일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이 시초점을 쳤다. 밖의 일은 강일(剛日)에 하고, 안의 일은 유일(柔日)¹⁷⁾을 정해 사용했으며, 귀복점과 시초점을 어기지 않았다.”¹⁸⁾

공자가 말하였다. “대인의 기물은 위엄이 있어 공경하고 소중히 여겼다. 천자는 시초점을 하지 않고 제후는 시초점을 쳤다. 천자는 (출행할 때) 길에서 시초점을 쳤다. 제후는 그 나라 국경이 아니면 시초점을 하지 않았으며 거택과 침실을 마련할 때 귀복점을 쳤다. 천자는 태묘에서는 귀복점을 치지 않는다.”¹⁹⁾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귀복점과 시초점을 어기지 않고 군장으로 일을 공경한다. 이런 까닭에 윗사람은 백성을 업신여기지 않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알보지 않았다.”²⁰⁾

위 인용문은 공자가 말한 복서에 관한 글이다. 그 내용은 옛날 삼대의

-
- 16) 길일을 택하여 일을 처리하므로 일월의 날짜를 어기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17) 外事는 治兵, 巡狩, 朝聘, 盟會 등을 말한다. 剛日은 陽日이며 천간이 甲, 丙, 戊, 庚, 壬의 일진인 경우이다. 內事는 종묘의 제사, 관례, 혼례 등을 말한다. 柔日은 陰日이며 천간이 乙, 丁, 己, 辛, 癸의 일진인 경우이다.(이상옥 편역, 『예기』下, 명문당, 2014, 125쪽.)
18) 「복서통의」 280쪽. “子言之: “昔三代明王, 皆事天地之神明, 無非卜筮之用, 不敢以其私褻事上帝. 是以不犯日月, 不違卜筮. 卜筮不相襲也. 大事有時日, 小事無時日, 有筮. 外事用剛日, 內事用柔日, 不違龜筮.”
19) 「복서통의」 280쪽. “子曰: “大人之器, 威敬. 天子無筮, 諸侯有守筮. 天子道以筮. 諸侯非其國不以筮, 卜宅寢室. 天子不卜處太廟.”
20) 「복서통의」 280쪽. “子曰: “君子不違龜筮, 以敬事其君長. 是以上不瀆於民, 下不褻於上.”

명왕들이 모두 천지의 신명을 섬겨서 귀복점과 시초점을 사용하지 않음이 없었다는 점과 사사롭고 더러운 마음으로는 상제를 섬기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삼대의 명왕, 천자, 제후들 모두 국경, 거택, 침실, 태묘 등과 관련해 귀복점 혹은 시초점을 정해서 행했으며, 점의 결과는 상제의 뜻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결코 이를 어기지 않고 추존했다고 하였다. 인용문은 귀복점과 시초점이 행해진 사례와 점사를 대하는 천자와 귀족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를 파악하게 한다. 대인의 기물도 위엄이 있어 공경하고 소중히 여겼으며, 귀복점과 시초점을 군자들은 어기지 않고 공경했다고 하였다.

정약용은 이에 대해 고대의 점이 천지신명을 섬김으로써 상제를 섬긴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옛 사람은 천지신명을 섬김으로써 상제를 섬겼다. 【『중용』에서 ‘교사(郊社)²¹⁾의 예로 상제를 섬기는 까닭이다.’²²⁾라고 말한 것도 또한 이 뜻이다.】 그러므로 귀복점과 시초점은 청명하는 것이다. 공자가 말한 것은 이 뜻을 밝힌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평소 기거할 때 이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일을 당해서 귀복점과 시초점을 섬기는 것은 그 성패를 탐색하는 것이니, 하늘을 업신여기고 신을 모독함이 심하다. 내가 『역』의 상을 주석해 해석함은 경전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역』의 사례가 이미 밝으니 시초점을 행할 수 있다.’고 하면, 오직 점의 징험과도 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일에 빠짐이 적지 않다. 이것이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다. 지금 사람이 율음을 지키려면 마땅히 복서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²³⁾

- 21) 제왕이 천지에 제사하는 것. 혹은 그 제단. 『史記』·「封禪」편에 의하면 동지에 南郊에서 하늘에 제사하는 것을 郊라 하고, 하지에 北郊에서 땅에 제사하는 것을 社라고 한다. 곧 郊에서 상제에 제사 지내는 郊祭와 사직신에 대한 제사 사직제를 일컫는다. 교사를 세웠다는 것은 곧 국가를 세웠다는 의미이다.
- 22) 『예기』 제31장은 『중용』이다. 위 문장은 『중용』 제19장에 나온다.
- 23) 「복서통의」 280쪽. “古人事天地神明，以事上帝。【《中庸》曰：郊社之禮，所以事上帝，亦此義】故卜筮以聽命。孔子所言，明此義也。今人平居既不事神，若唯臨事卜筮，以探其成敗，則慢天瀆神，甚矣。余疏釋《易》象，爲明經也。若有人謂《易》例既明，可以

즉 귀복점과 시초점이 청명(聽命)의 행위이고, 천지신명을 섬기려는 마음가짐의 발로로 행해졌기때 만일 신을 섬기는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은 채 점을 친다면 신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정약용의 생각이다. 그는 복서를 행할 처음 마음가짐과 의미가 잘못되었다면 차라리 복서를 폐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강력한 입장인 것이다.

다음은 『예기』·「곡례」24)에 있는 ‘복서의 의미’를 살펴보자.

무릇 귀복점과 시초점으로 택일하는 것은 10일의 맑(지남)은 ‘먼 어느 날’이라고 하고, 10일의 안(이내)은 ‘가까운 어느 날’이라고 한다. 말하기를 ‘길일로 삼는 것은 너의 큰 거북이 항상함이 있어 빌리기 때문이고, 너의 큰 설시가 항상함이 있어 빌리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복서가 세 번을 넘지 않으며 복서가 서로 잇달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귀갑의 점을 ‘복’이라 하고, 점대로 하는 점은 ‘서’라 한다. 귀복점과 시초점은 선대 성왕이 백성으로 하여금 시일을 믿게 하고, 귀신을 공경해 범령을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백성으로 하여금 꺼리고 싫어하는 걸 결단하게 하고, 미루는 일을 결정하게 한다. 그러므로 말하길 “의심날 때 그것을 시초점 치면 아닌 것이 아니다. 길일에 일을 행하면 반드시 그것을 실천 한다.”고 했다. 임금 앞에서 점대를 거꾸로 하거나 귀갑을 기울이면 주살하였다. 귀갑과 점대는 공문에 들이지 않는다.²⁵⁾

行筮’ 則不惟占驗不合, 而其陷溺不少. 此余之所大懼也. 今人守正者, 宜廢卜筮.”

- 24) 『禮記』·「曲禮」편은 의식이나 행사에서 몸가짐 등에 관한 예의법절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曲은 위곡(委曲)의 뜻으로 자세하고 소상하다는 의미이다.(李相玉 編譯, 『예기』上, 명문당, 2014, 37쪽)
- 25) 「복서통의」 280쪽. “凡卜筮, 旬之外, 曰遠某日, 旬之內, 曰近某日. 曰爲日, 假爾泰龜有常, 假爾泰筮有常, 卜筮不過三, 卜筮不相襲. 龜爲卜, 筮爲筮. 卜筮者, 先聖王之所以使民, 信時日, 敬鬼神, 畏法令也. 所以使民決嫌疑, 定猶豫也. 故曰: “疑而筮之, 則弗非也. 日而行事, 則必踐之.” 倒筮側龜於君前, 有誅. 龜筮, 不入公門.”/ 筮: 『禮記』·「曲禮」에는 이 뒤에 ‘曰’이 있다./ 『禮記正義』·「曲禮」上, 孔穎達 疏: “曰爲”至“有常”者, 曰, 命龜筮辭也. 卜擇吉日, 故云 “曰爲日”. ○“假爾泰龜有常, 假爾泰筮有常”者, 假, 因也. 爾, 汝也. 爾謂指著龜也. 泰, 大中之大也. 欲褒美此龜筮, 故謂爲泰龜泰筮也. “有常”者, 言汝泰龜泰筮決判吉凶, 分明有常也. 故云 “假爾泰龜”, “泰筮有常”

만일 복서를 시행할 때 임금 앞에서 점대를 거꾸로 하거나 귀갑을 기울인 경우는 어떠했을까? 만일 그런 경우라면 주살(誅殺)했다고 한다. 주살은 범죄자에게 죄를 몰아서 죽이는 것이다. 점대와 귀갑을 소홀히 다루는 것이 죄였다는 의미이다. 귀복점에서 실수를 한 것에 대해 이처럼 가혹하게 형벌을 내렸던 것은 복서의 예법과 의식절차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곡례」는 복서가 천명을 전하는 것이고, 변함없는 항상성이란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복서를 행할 때 사용하는 귀갑과 점대도 기물로 존중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성왕(聖王)들에게는 복서가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고대인은 복서의 결과를 순명(順命)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백성이 믿음을 갖고 법령을 두려워하게 할 통치적 의미가 있었다. 「곡례」편에 이것이 자세하다.

그렇지만, 정약용은 춘추시대 이후에는 신명을 섬기고, 통치적 목적을 가졌던 복서의 뜻이 점차 어두워졌다고 했다. 『좌전』에 실린 시초점의 뜻도 이미 옛 뜻과 달라졌는데, 그 이유를 진(秦)·한(漢) 이래 귀복점과 시초점이 점차 사된 술수에 빠져들어서 선왕의 본의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왕제(王制)」²⁶⁾에서는 “귀신, 시일, 복서를 빌어서 민중을 의혹시키는 자는 죽였다.”고 했고, 정약용은 한(漢)나라 초기에 지어진 이 「왕제」의 내용이 ‘바르다[正]’고 평가하였다.²⁷⁾

다음 『예기』 「소의(少儀)」편에 있는 복서의 의미를 살펴보자.

두 번 묻지 않는다. 귀복점과 시초점을 물을 때 “옳은 것인가 사사로
운 것인가?”라고 물었다. 옳은 것이면 (점을) 물을 수 있고, 사사로우면

26) 「王制」는 『예기』의 편명이다.

27) 「복서통의」 281쪽. “先王之世, 敬事神明, 故設爲卜筮. 使民信時日, 敬鬼神. 春秋以降, 此義漸晦, 『左傳』諸筮, 已非古義. 秦漢以下, 卜筮漸淪於邪術, 非復先王之本意, 故其在「王制」曰: “假於鬼神, 時日, 卜筮以疑衆者, 殺.” 【《王制》者, 漢初所作】 今人立法, 當以「王制」爲正.”

묻지 않았다. 귀갑과 점대를 잡을 때는 성급하게 달려가지 않는다.²⁸⁾

「소의」에 의하면, 귀복점 혹은 시초점을 두 번 묻지 않는다. 옳은 일인지 아니면 사사로운 욕망이나 의도를 가진 것인지의 도덕적인 여부가 중요했다. 만일 사사로운 의도로서는 귀복점을 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용문을 통해서 귀갑과 점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복서의 권위 및 복서를 행하려는 일의 성격에 따른 마음가짐을 파악할 수 있다.

「소의」편에 있는 옳음을 정약용은 무엇이라고 해석했을까?

옳음이란 천리를 헤아려 합하는 것이다. 사사로움이란 의지적으로 내 마음이 가는 바이다. 『역』에서 무릇 ‘바름이 이롭다[利貞]’, ‘바름이 길하다[貞吉]’이라고 하는 종류는 모두 「소의」에서 말한 ‘옳음’의 뜻이다. ‘정(貞)’은 바른 일이고 옳음에 합당하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비록 바른 일일지라도 또한 귀복점과 시초점을 마땅하다고 여기지 않으니 예와 지금의 마땅함은 다르다. 제사에는 주검을 쓰지 않고 밭에는 정전을 굿지 않는데, 오직 귀복점과 시초점만 없애지 않을 수 있겠는가?²⁹⁾

정약용은 옳음이 천리를 헤아려 합하는 의미라고 해석하였다. 이정(利正)과 정길(正吉) 등에 있는 ‘정(貞)’ 자는 바른 일, 옳음을 뜻한다고 보았다. 「소의」에서의 옳음이 그렇다는 의미이다. 물론 일의 사안이 바를지의 당위성 여부는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정약용은 복서의 의미를 만일 파악하지 못한다면, 복서는 폐지해도 좋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것은 명(命)을 섬기는 의미를 지대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28) 「복서통의」 281쪽. “不貳問. 問卜筮, 曰: “義與, 志與?” 義則可問, 志則否. 執龜筮, 不趨.” 이 문장의 『예기』 원문은 “執玉執龜筮不趨, 堂上不趨, 城上不趨. 武車不式, 介者不拜. 婦人, 吉事雖有君賜, 肅拜. 爲尸坐則不手拜, 肅拜. 爲喪主則不手拜. 葛經而麻帶. 取俎進俎不坐.”이다.

29) 「복서통의」 281쪽. “義者, 揆諸天理而合者也. 志者, 吾心之所之也. 『易』凡云‘利貞’·‘貞吉’之類, 皆是「少儀」之義. 貞者, 正事也, 合於義者也. 然今人雖正事亦不宜卜筮, 古今異宜也. 祭不用尸, 田不畫井, 獨卜筮不可廢乎?”

IV. 영시사(令蓍辭)와 복조요(卜兆繇)

영시사(令蓍辭)는 시초점에서 나온 주사(繇辭)란 뜻이고, 복조요(卜兆繇)는 귀복점을 행하여 나온 조사(兆辭)란 뜻이다. 정약용은 「영시사」와 「복조요」를 따로 분류해 고대에 행해진 점의 역사적 사례를 분류하였다.

『주역』이 점서에 근거를 둔다는 것을 인식한 대표적인 학자로 주희(朱熹, 1130~1200)가 있다. 그는 ‘『주역』이 본래 복서의 책(易本卜筮之書)’이라고 판단하고, 『주역본의』 「서의(筮儀)」에서 시초점을 행하는 예식 절차와 방법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였다. 즉 『주역』에는 ‘복과 서’를 행한 중국 고대문화의 원형이 담겼기에 이를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정약용도 또한 「시괘전(蓍卦傳)」을 저술해 설시법(揲蓍法)에 해명하였고, 역수(易數)에 담긴 세부적인 의미들을 새롭게 규명하였다.

주희가 지은 「서의」 가운데 정약용은 다음의 글을 발췌해 논하였다.

주자는 서의에서 “길흉을 알리는 데에 항상 믿음성이 있는 신명한 점대를 빌리노라!”³⁰⁾ 【「서의」는 이를 거듭 말하였다.】 어떤 벼슬아치의 성명 아무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 가부를 알지 못하여 이에 의심나는 바를 신령께 질정하오니, 길·흉, 득·실, 화·린, 걱정과 근심이다. 오직 신(神)이 있으니, 바라건대 그것을 밝게 고하여 주소서!”라고 했다.³¹⁾

주희는 시초점 치는 이유를 어떤 사건의 가부를 신령께 묻는 것이라고 했다. 미래 일의 불확실성에 대한 결과가 길·흉(吉凶), 득·실(得失), 화·린(悔吝), 걱정과 근심 가운데 무엇일지를 물었던 것이다. 점대는 불변하는 항상성을 가지고 길흉을 전한다고 보았다. 정약용은 「서의」에서 주희가 신령께 질정하고, 오직 신께 그것을 알고자 했다는 점에 주목했을지 모

30) 태서(泰筮)란 ‘신명한 점대’란 뜻이다. 『禮記』·「曲禮」편에 나온다.

31) 「복서통의」 286쪽. “朱子「筮儀」曰 “假爾泰筮有常! 【「筮儀」重言之】 某官姓名, 今以某事, 未知可否, 爰質所疑于神于靈. 吉凶得失, 悔吝憂虞. 唯爾有神, 尙明告之!”

른다. 이러한 점을 보면, 혹 정약용 역학이 종교적 특성을 지닌 것이 아닌가 싶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고대 ‘복서’가 신령계 질정하고, 천명을 품부 받는 행위의 예법이자 방법이었던 점을 피력해 연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영지사」에는 『예기』의 「곡례」편과 『좌전』, 『국어』에 기록된 복례(卜例)와 서례(筮例)의 역사적 사례를 담겨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곡례」에는 “택일을 하는 것은 너의 큰 시초점이 가장 항상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위일(爲田)은 길일을 잡는 시초점 치는 것이다. ○이것은 대개 시초의 점사가 일으킨 말이다.】

『좌전』에는 초나라 아들이 오나라를 정벌하니, 【소왕 5년】 오나라는 궤유(黷由)에게 음식을 보내 군대를 위로하도록 하였다. 궤유가 말하기를 “저희 임금께서 그것을 귀복점 치고, 귀갑을 이행했다.”고 했다.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시켜 군대에게 음식을 베풀어 위로하려 하니, 청컨대 왕의 분노가 빠르지 느린지를 살피면서 행할 준비를 하고 바라건대 잘 알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것이 귀복점의 점사이다.】

『좌전』, 위나라 양공이 집(紇)과 원(元)을 낳았다. 【소왕 7년】 공성자가 『주역』으로 시초점을 치고 말하길 “원(元)이 오히려 위나라를 형통하게 하고 사직의 주인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첫 시초점의 점사】 또 말하길 “내가 오히려 집(紇)을 세우고자 하니 바라건대 잘 돌보소서!”라고 했다. 【이것이 두 번째 시초점 점사】

『좌전』에는 초나라 영왕이 귀복점을 치고는 【소왕 13년】 “내가 아마도 천하를 얻겠구나!”라고 했다. 【이것은 귀복점의 점사】

『좌전』에 오나라가 초나라를 정벌하였다. 【소왕 17년】 영윤이 전쟁을 위해 귀복점을 치니 불길했다. 사마자어³²⁾는 “초나라의 일로 【고(故)는 일

32) 사마자어(司馬子魚, 생출미상)는 춘추시대 송나라 사람. 송양공(宋襄公)이 산 사람을 희생물로 삼아 제사하자, 인간이 신보다 우선한다며 이를 반대하였다. 그는

이다.】 사마자어가 귀복점에 물으니 내가 청하건대 귀복점을 고치고자 한다.”고 하였다. 명령하기를 “나 방(魴) 【자어(子魚)의 이름】 이 그 무리들이 죽고, 초나라 군사가 계속 그것을 이어서 하면 오히려 크게 이길 것이다!” 【이것은 귀복점의 점사】

『국어』에 “진(晉)나라 공자 중이가 나라를 얻는 시초점을 보려는데, 친히 그 시초점을 치고 말하기를 ‘바라건대 진나라를 주소서!’라고 하였다.”고 하였다.³³⁾

인용문에 보이는 ‘복과 서’의 사례가 다양하다. 정약용은 논평에서 “『곡례』에 있는 ‘너의 큰 거복·이를테면 너의 큰 시초점은 ‘복’인 거복을 칭하며, ‘서’는 곧 시초점을 칭한다. 아마도 이를 증언한 것은 마땅하지 않다. 또 우두머리 시초의 점사는 마땅히 간략하고 엄숙함을 따른다. 『좌전』의 여러 문장은 상고할 수 있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마땅히 「왕제」를 바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³⁴⁾라고 했다. 즉 ‘택일을 하는 것은 너의 큰 시초점이 가장 항상함이 있기 때문이다.’를 증언할 필요는 없다는 비판이자, 『예기』·「왕제」편에 담긴 복서의 내용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례』·「태복(太卜)」에는 ‘삼조(三兆)의 법」을 언급하고 있다. 삼조는

귀신 숭상을 배격하고 인본주의를 선양하였다.

- 33) 「복서통의」 285~286쪽. “『曲禮』曰：“爲日，假爾泰筮有常。”【爲日者，爲筮日也。○此蓋令著辭之起語】 ○『左傳』，楚子伐吳，【昭五年】 吳使馮由犒師。由曰：“寡君，卜之以守龜。”曰：“余亟使人犒師，請行以觀王怒之疾徐，而爲之備，尙克知之!”【此令龜之辭】 ○『左傳』，衛襄公生絜及元。【昭七年】 孔成子以『周易』筮之，曰：“元，尙享衛國，主其社稷!”【初筮令】 又曰：“余尙立絜，尙克嘉之。”【此再筮之辭】 ○『左傳』，楚靈王卜【昭十三年】 曰：“余尙得天下!”【此令龜之辭】 ○『左傳』，吳伐楚。【昭十七年】 令尹卜戰，不吉。司馬子魚曰：“楚故【故事也】 司馬令龜，我請改卜。” 令曰：“魴也【子魚名】 以其屬死之，楚師繼之，尙大克之!”【此令龜之辭】 ○『國語』：“晉公子重耳筮得國，親筮之曰，‘尙有晉國!’”
- 34) 「복서통의」 286쪽. “鋪案「曲禮」，‘假爾泰龜·假爾泰筮’者，謂卜則稱龜·筮則稱筮也。恐不當重言之。且令著之辭，宜從簡嚴。『左傳』諸文，猶可考也。然今人當以「王制」爲正。”

옥조(玉兆), 와조(瓦兆), 원조(原兆)를 말한다. 이것은 ‘전옥(顛頊)’ ‘제요(帝堯)’ ‘주(周)’ 등 나라별로 사용했던 ‘조’를 말한다. 『주역』이 완성되기 전에 복조를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복조요」를 보면, 역사적인 복례가 있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좌전』에서 (진나라 대부) 의씨가 경중에게 딸을 시집보내려고 귀복점을 쳤다. 【장공 22년】 그의 아내가 점치고 말하기를 “길하다. 【의씨 아내】 이것은 ‘봉황이 사이좋게 날아올라 화합하여 우는 소리가 금옥의 소리이다. 【이는 兆書의 말이다】 유규(有媯)의 후손이 장차 강(姜)씨에게서 양육되니 【媯는 진(陳)의 성씨】 5세에 이르면 창성하고 정경(正卿)과 나란히 할 것이다. 8세 이후에는 그보다 더 크게 되는 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점치는 사람의 말이다】 35)

위와 같은 혼사의 사례 외에도 다양한 복례를 「복서통의」에 기록한 정약용은 점친 결과의 문장과 문자의 해석에 있어서 논박할 부분은 훈고학적 지식을 활용해 비판하였다. 예를 들면 “성계가 장차 출생함에 환공은 복초구의 아버지로 하여금 귀복점을 치게 하였다. 【민공 2년】 점을 본 뒤 말하기를 “남아이고, 그 이름은 우(友)입니다. 공의 오른 쪽에 있을 것이며, 양사(兩社)에서 공실(公室)을 보좌할 것입니다. 계씨가 죽으면 노나라는 창성할 수 없습니다.”36)라는 점에서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논박하였다.

상고해 보니, 우(友)는 고문(古文)는 𠄎이다. 우(右)는 고문에서 𠄎이다. 𠄎은 손이다. 반드시 그 귀복점의 조짐의 글이 𠄎이며, 이것은

35) 「복서통의」 286쪽. “『左傳』, 懿氏卜妻陳敬仲. 【莊二十二年】 其妻占之, 曰: “吉. 【懿氏妻】 是謂‘鳳凰于飛, 和鳴鏘鏘. 【此兆書之詞】 有媯之後, 將育于姜, 【媯, 陳姓】 五世其昌, 並爲正卿. 八世之後, 莫之與京.” 【此占者之詞】 成季之將生也, 桓公使卜楚丘之父, 卜之 【閔二年】 曰: “男也, 其名曰友. 在公之右. 間于兩社, 爲公室輔. 季氏亡則魯不昌.” 【此占者之詞】 ”

36) 「복서통의」 287쪽. “成季之將生也, 桓公使卜楚丘之父, 卜之 【閔二年】 曰: “男也, 其名曰友. 在公之右. 間于兩社, 爲公室輔. 季氏亡則魯不昌.” 【此占者之詞】 ”

손에 있는 징표로 즉 손금이다. ○『주례』에는 건국하는 제도는 우사(右社)이고, 두 개의 𠂔이라는 문자가 있으므로 양사(兩社) 사이에 있다고 한 것이다. 보(輔) 또한 거우(車右)의 이름이며, 출생할 때 그 문자가 손바닥에 있으므로 우(友)라고 말했고, 마침내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³⁷⁾

또 정약용은 희공 4년에 진(晉)나라 헌공이 여희(驪姬)를 부인으로 삼으려고 귀복점을 친 점사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진헌공의 주사는 “오로지 그(여희)만을 총애하면 변하여 공의 산양(숫양, 아름다움)을 제거할 것이다. 향기 나는 풀과 악취 나는 풀이 함께 있으면 10년이 지나 오히려 악취만 남는다.”³⁸⁾는 것으로 불길했다.³⁹⁾ 두예(杜預)는 “유(羴)는 아름다움이다.”이라고 했지만, 정약용은 이와 다르다고 했다. 정약용은 “『이아』에는 하(夏)나라 양(羊)의 수컷은 유(羴)이다. 『귀장역(歸藏易)』은 ‘양호양유(兩壺兩羴: 두 개의 호(壺)와 두 개의 유(羴))’라고 했는데, 이것이다. 하나라의 양은 검은 산양(羴)이다. 여희가 헌공의 세자를 살해하였으니, 이것이 공(公)의 양을 훔친 것이다.”⁴⁰⁾라고 했다. 이처럼

- 37) 『복서통의』 287쪽. “案 友, 古文爲 𠂔. 右, 古文爲 𠂔. 𠂔者, 手也. 必其龜兆之文爲 𠂔, 是文在手之徵也. ○『周禮』, 建國之制, 右社, 以其有兩 𠂔之文, 故謂在兩社之間也. 輔亦車右之名, 及生, 有文在其手, 曰友, 遂以命之.”/ 좌구명 지음, 장세후 옮김, 『춘추좌전』上, 을유문화사, 2012, 560쪽. ‘낳았을 때 손에 우(友)자의 무늬가 그려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及生, 有文在其手曰 ‘友’, 遂以命之. 遂以为名.”
- 38) 『춘추좌전』 ‘희공 4년’에 실린 내용이다. ‘희공 15년’ 『전』에서 진나라 韓幹은 “거북은 象이고, 筮는 數이다. 사물이 생겨난 후에 象이 있고, 번식을 한 후에 數가 있다.”고 하였다.(좌구명 지음, 장세후 옮김, 『춘추좌전』上, 을유문화사, 2012, 625~626쪽)
- 39) 『복서통의』 287쪽. “晉獻公欲以驪姬爲夫人, 卜之, 不吉. 【僖四年】 其繇曰: “專之渝, 攘公之羴, 一薰一蕕, 十年尙猶有臭.” 【此兆書之詞】 ” 『定本 與猶堂全書』 제17권 『易學緒言』의 표점을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주사이므로 ,(곰마) =>.(마침표)로 수정하였다./ 일훈일유(一薰一蕕)는 ‘향기 나는 풀과 악취 나는 풀’이라는 뜻이다. 내용은 좋은 쉽게 잊히고惡은 오래도록 전해짐을 비유한 뜻이 있다.
- 40) 『복서통의』 287쪽. “杜曰: “羴, 美也.” ○案 『爾雅』, 夏羊之牡者, 爲羴. 『歸藏易』所云 ‘兩壺兩羴者, 是也. 夏羊羴也. 驪姬殺公之世子, 此, 攘公之羴也.”

정약용은 귀복점과 시초점에 나온 점의 글귀를 훈고학과 고증학을 활용하여 재해석하였다.

더불어 정약용은 ‘복서’를 행한 경우, 조서와 점사가 어떤 형식과 종류일지도 파악하고자 했다. 설시의 방법이 『주역』 「계사전」에 기록된 형태의 시초점이라면 『주역』 경문으로 해석했을 것이다. 그러나 귀복점은 주로 은(殷)대에 주로 행해졌으니, 은말주초(殷末周初)에 만들어진 『주역』보다 이른 시기였다. 하늘에 청명하는 귀복점은 그 ‘복’을 해석할 때 『주역』과 다른 주사를 활용했을 것이다. 정약용은 『주례』·「태복」에 기록된 귀복점과 귀복점을 친 조사(卜兆繇)에 관한 글을 인용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상고해 보았다. 『주례』·「태복」에는 “삼조의 법을 주관한 것은 첫째 옥조(玉兆) 【정현은 ‘전옥(顛頊)의 조’라고 하였다.】 이고, 둘째 와조(瓦兆) 【제요(帝堯)의 조】이며, 셋째 원조(原兆)라 한다. 【주나라의 조가 있다.】 그 경조의 체는 모두 120 종류이고 【『역』에 64괘가 있음과 같다.】 그 송은 모두 1,200개이다. 【송(頌)이란 주사이다. ○역사(易詞)가 450개 있음과 같다.】” 고 했다.⁴¹⁾

이 글은 「복조요」뿐 아니라 「이정조집해론(李鼎祚集解論)」에도 기록되어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은대에는 옥조, 와조, 원조라는 삼조가 있었다. 옥조는 전옥⁴²⁾ 시대의 조, 와조는 제요의 조, 원조는 주나라의

41) 「복서통의」 288쪽. “案『周禮』·「太卜」: “掌三兆之法。一曰玉兆【鄭云: “顛頊兆。”】二曰瓦兆【帝堯兆】三曰原兆【有周兆】其經兆之體, 皆百有二十, 【如《易》之有六十四卦】其頌皆千有二百。【頌, 繇辭也 ○如《易》詞之有四百五十】”

42) 전옥(顛頊)은 중국 고대의 제왕으로 전설에 나오는 오제(五帝) 가운데 한 사람. 황제(黃帝)의 손자. 창의(昌意)의 아들, 우왕(禹王)의 할아버지이다. 20세에 임금 자리에 올라 처음 고향(高陽)에 나라를 일으켰기에 고향씨(高陽氏)라 부른다. 제구(帝邱)에 도읍을 정했고, 재위기간은 78년이라 한다. 천하를 잘 다스려 명군(明君)으로 이름이 높았다./ 『淮南子』의 「天文訓」에 보면 그가 共工라는 자와 제위를 놓고 다투었는데, 공공의 힘이 넘쳐 불주산(不周山)에 서 있던 천주(天柱)를

조를 말한다. 삼조의 경문은 『주역』과는 달랐는데, 당시의 경조(經兆)의 체는 모두 120개였다. 경조에는 각각 조사가 10개이기 때문에 총 경조의 수는 1200개가 된다. 정약용이 설명한 『주역』의 점사와 삼조의 조사를 표로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보인다.

	주역	삼조
경조의 체	64괘	120개
경조의 조사	6효	10개의 조사
총 경조	450개	1200개

『주역』의 역사(易詞)는 450개, 삼조의 조사는 1200개라고 했다. 『주역』의 역사가 모두 450개인 것은 64괘 384효의 괄효사에서 괄사가 64개, 효사가 384개, 또 용구(用九)와 용육(用六)이 포함되어 총 450개의 역사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삼조의 복조는 『주역』보다 약 3배 많다. 정약용이 말한 삼조의 경조의 체가 120개, 각 체에 10가지의 조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현의 주석에도 나타난다.

조는 구운 귀갑의 형태로서 마치 옥과 기와와 밭에 난 금이 간 틈과 비슷하다. 【원(原)은 밭이다.】 매 체가 10가지의 요사가 있다. 【『역』의 매 괄에 7개의 요사가 있는 것과 같다.】 체는 오색이 있고 또 그것을 거듭하면 묵탁(墨坵; 龜甲의 균열상)이 된다. 【정현은 “오색이 「홍범」에서 말한 우(雨)·제(霽)·역(圜)·모(蠱)·극(剋)을 말한다.”고 했다.】” 그 책이 크고 풍성해 『역』의 세 배로 보이지만, 지금에도 징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좌전』에 드러난 몇 구절뿐이다.⁴³⁾

부러뜨렸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하늘은 북서로 기울고 일월성신은 북서를 향해 운행하게 되었다고 한다.(임종욱 편저, 『중국역대인명사전』, 이회, 2010, 1569쪽)

43) 『북서통의』 288쪽 鄭註云: “兆者, 灼龜之形 似玉·瓦·原之豐罅者. 【原, 田也】 每體十繇 【如『易』之每卦, 七繇】 體有五色, 又重之以墨坵也. 【鄭云: “五色者, 『洪範』 所云曰

고대인들은 시초점과 귀복점 등의 형식, 절차, 예법을 달리하여 천명을 품부 받으려 했다. 천명을 품부 받아 승수(承受)하려면 청명(聽命)해야 했다. ‘청명’이란 실제적으로 하늘[天]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천이 보내는 상징과 기호를 독해하는 행위인 것이다. ‘품명(稟命)’을 위해서는 ‘청명’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명에 따라 그들은 또 ‘순명(順命)’하였다.⁴⁴⁾

‘복서’에는 미래의 일을 예측해 대처능력을 함양하려는 인간의 의지와 지혜가 반영되어 있다. 또 우환의식(憂患意識)의 발로로서 천명을 통해 인간을 통치하려는 고대인의 생각과 주술적이고 문화적 행동이 복합되어 있다. 고대인들의 이러한 문화와 인식이 『주역』에 ‘변역(變易)’의 역리로 은축되었을 것이다. 정약용은 「계사전」에 수록된 시초점이 자세하지 않고, 복서의 뜻도 왜곡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괘전(著卦傳)」을 새로 지었고, 고대인이 행한 복서의 근원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복서통의」를 저술함으로써 해명했던 것이다.

V. 정약용이 밝힌 복서총의(卜筮總義)

복서총의(卜筮總義)는 복서가 지닌 총체적 의미라는 뜻이다. 정약용은 『주례』, 『좌전』, 『예기』, 『시경』, 『서경』 등에 기록된 복서의 다양한 사례

雨, 曰霽, 曰團, 曰蠡, 曰烜】” 其書浩穰, 視『易』三倍, 其可徵於今者, 唯『左傳』所著數句耳. 世稱‘卜筮之書, 不經秦火’, 然古者‘家不寶龜’, 【〈禮器〉云】”

- 44) 방인은 ‘順命’이라는 단어는 『주역사전』에는 履卦 九二의 注에서 “高潔順命” 『定本』 제15책 188쪽. 蠱卦 六五의 注에서 “巽以順命” 『定本』 제15책 246쪽. 등 여러 차례 나온다. 『역학서언』에는 「班固藝文志論」에 나온다. “文王以諸侯 順命而行道” 『定本』 제17책 74쪽. 그리고 ‘順命’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易論」 『周易四箋』에서 “易何爲而作也 聖人所以請天 之命 而順其旨者也” 『定本』 제15책 328쪽 이라고 한 것은 ‘順命’의 개념을 드러낸다고 했다.(방인, 「다산역의 천명관-請命, 稟命 그리고 順命」, 『다산학』 제26호, 2015. 16쪽.)

를 말하고, 자신의 견해를 복서총의에서 밝혔다. 그는 귀복점은 결코 신명(身命: 몸과 목숨)의 영화나 복록, 지위, 명예를 흠모해서 행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진경중(陳敬仲), 필만(畢萬), 숙손표(叔孫豹) 등이 점친 사례는 영화로움을 흠모해 나온 점이지만, 이와 다르다고 했다.⁴⁵⁾

귀복점을 친 복례(卜例)는 『주례』에 다양하게 나온다. 『주례』·「춘관(春官)」은 “태복은 세 가지의 「조」와 세 가지의 『역』을 관장하였다. 무릇 나라가 크게 묻는 것은 임금을 옹립하는 것을 귀복점 치고, 넓은 봉토를 정하는 것을 귀복점 치니, 곧 높은 곳을 살펴서 귀갑을 만들었다. 무릇 작은 일도 귀복점을 보았다. 국가의 큰 천도, 큰 군사의 움직임에도 귀갑으로 점쳤다. 무릇 군사의 일도 귀갑을 늘어놓았다. 무릇 상사(喪事)도 귀복점의 명을 섬겼다.”⁴⁶⁾고 했다. 즉 귀복점은 임금을 옹립하거나 나라를 천도해 도움을 세우거나 제사의 점, 전쟁에 출정해 정벌하는 점, 군사의 점뿐만 아니라 질병에 관한 점, 물과 가뭄에 관한 점, 장지를 정하는 택일의 점, 일월에 관한 점, 잉태와 출산의 점 등 다양한 경우에 시행하였다. 또 세 가지의 「조」란 『주례』·「태복」에 있는 옥조, 와조, 원조이며, 세 가지 『역』은 『연산역(連山易)』·『귀장역(歸藏易)』·『주역(周易)』을 말한다.

위의 귀복점 사례 가운데 『좌전』⁴⁷⁾에 기록된 임금을 옹립한 점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 45) 「복서통의」 285쪽. “卜其身命者，不出於榮祿位名之慕。【如陳敬仲，畢萬，叔孫豹之占】”
- 46) 「복서통의」 282쪽. “太卜，掌三〈兆〉三〈易〉。凡國大貞，卜立君，卜大封，則祗高作龜。凡小事，涖卜。國大選，大師，則貞龜。凡旅，陳龜。凡喪事命龜。【『周禮』·「春官」】”
- 47) 반고(班固, 32-92)의 『漢書』·「藝文志」는 『춘추』에 관한 傳이 모두 23家 948篇이라 했다. 전국시대에 공양고(公羊高)가 지은 『公羊傳』, 穀梁俶(穀梁赤이라고도 함)의 『穀梁傳』, 좌구명(左丘明)의 『左氏傳』이 ‘춘추삼전(春秋三傳)’이다. 『공양전』과 『곡량전』은 경문해석이 중심이고, 『좌씨전』은 『춘추』에 기록된 사실에 대한 역사적 실증적 해석이 중심이다.

『좌전』에 의하면, 위나라 양공이 맹집과 원을 낳았다. 공성이 그것을 시초점 치니 길하여 원을 옹립하였다. 【소왕 7년】 노나라 양공이 죽자 공자 주(稠)를 옹립하였다. 목숙이 말하길 “나이가 고르면 어진 사람을 선택하고, 옴음이 고르면 귀복점을 친다.”⁴⁸⁾ 【양공 31년】 고 했다. 『예기』에 의하면, 석태중이 죽을 때 서자 여섯 사람이 있었다. 후계자를 삼기 위한 귀복점에서 석기자로 점괘가 나왔다. 【단궁,편】 이것은 임금을 옹립한 점이다. 【석기자는 대부임】⁴⁹⁾

시초점을 행한 사례들도 다양했다. 서례는 『주례』·「서인」, 『주례』·「태복」, 「사관례」, 「위풍」, 『좌전』에 기록이 많다. 시초점은 관직을 정하는 점, 제후를 세우는 점, 아내를 맞이하고 시집보내는 점, 빈객을 세우고 시동을 세우는 점, 뗏자리를 정하는 점 등에 사용하였다.⁵⁰⁾ 구체적으로 「사혼례」를 보면, 아내를 맞이하고 시집보내는 시초점도 기록되어 있는데, 남길⁵¹⁾하며 말하길 “제가 여러 가복(加卜)을 하니 점사가 길하다.”고 했다. 【「기(記)」 문장에 나옴】 「위풍」에는 “그대의 귀복점과 그대의 시초점의 점사에는 허물될 말이 없다.”고도 했다. 【이것은 「맹(氓)」의 시】 『좌전』

-
- 48) 『춘추』, “昭公年十九, 猶有童心. 穆叔不欲立, 曰: 「太子死, 有母弟可立, 不即立長年鈞擇賢, 義鈞則卜之.”
- 49) 「복서통의」 282쪽. “『左傳』, 衛襄公生孟縶及元. 孔成筮之, 吉, 立元. 【昭七年】 魯襄公卒, 立公子稠. 穆叔曰: “年鈞擇賢, 義鈞則卜.” 【襄三十一年】 『禮記』, 石駘仲卒, 有庶子六人. 卜所以爲後者, 石祁子兆. 【〈檀弓〉篇】 此立君之占也. 【石祁子, 大夫】”
- 50) 「복서통의」 282~283쪽. “『周禮』·「筮人」: “九筮, 八曰巫參.” 【鄭玄云: “筮御與右.”】 此立官之占也. 『周禮』·「太卜」: “大封則眡高作龜.” 【此封建】 『周禮』·「筮人」: “九筮, 三曰巫式. 【筮制作法式】 五曰巫易. 【筮所改易之事】” 此建侯立法, 皆有占也. 「士昏禮」, 問名曰: “某既受命, 將加諸卜.” 納吉曰: “某加諸卜, 占曰吉.” 【出〈記〉文】 〈衛風〉: “爾卜爾筮, 體無咎言.” 【此〈氓〉詩】 『左傳』, 晉獻公筮嫁伯姬. 史蘇占之, 曰: “不吉.” 【僖十五年】 崔杼欲娶棠姜, 筮之. 陳文子曰: “不可娶.” 【襄二十五年】 此婚嫁之占也.”
- 51) 남길(納吉)이란 주대(周代)에 행해진 혼례 의식 가운데 하나이다. 남채(納采) 문명(問名) 남길(納吉) 남징(納徵) 청기(請期) 친영(親迎)를 육례라고 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남길은 가묘에서 점을 쳐서 길한 조짐을 얻고 여자 집에 알리는 의식으로 이것에 의해 혼인이 확정된다.

에는 진나라 현공이 (딸) 백희를 시집보내는 시초점을 쳤고, 사소가 그것을 불길하다”고 말했다【희공 15년】고 하였다. 최저(崔杼)⁵²⁾는 당강(棠姜, 최저의 후처)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시초점을 쳤으며 진문자(陳文子)⁵³⁾는 “아내로 맞을 수 없다.”【양공 25년】⁵⁴⁾고 했다는 사례가 나온다.

그밖에도 복과 서를 둘 다 행했던 것은 ①임금을 응립한 점 ②제사의 점 ③일월에 관한 점 ④잉태와 출산의 점 ⑤장지를 정하는 점 등이 있었다.

정약용은 중국문헌을 고증해 다양한 복례와 서례의 기록을 찾고, 「복서통의」에 기록하였다. 더불어 ‘복·서’의 의미를 총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복서를 행한 방법은 백성에 앞에서 천명을 품부 받아 활용하려는 뜻에서 시작되었다. 둘째, 일이 비록 바를지라도 성패가 쉽게 구분된다면 귀복점 치지 않았다. 셋째, 이로움이 비록 분명해도 의리가 진실하지 않은 것 또한 귀복점을 치지 않았다. 오직 여러 올바름을 상고하고 비록 바르더라도 그 성패와 행운 또는 불운이 분명하지 않을 때 점을 쳤다⁵⁵⁾는 것이다.

어떤 사안에 관하여 시초점을 칠 때 정약용은 마음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약용은 “이것이 명을 품부 받을 만한 것인가? 이것이 명을

52) 최저(崔杼)는 제(齊)나라 영공(靈公: B.C.581~B.C.554 재위), 장공(莊公: B.C.553~B.C.548 재위) 시기의 권신. 자신이 응립한 장공이 자신의 후처 당강(棠姜)을 계속 농락하는데 대해 원한을 품고 B.C.548년에 난을 일으켜 장공을 시해하였다. 가거(賈舉)·주작(州綽)·병사(邴師)·공손오(公孫敖) 등 장공의 절친한 대신들까지 대거 처형한 후 공자 저구(杵臼)를 경공(景公, B.C.547~490)으로 응립하였다.([『열국지사전』, 서울출판사, 2001.)

53) 진문자(陳文子)는 제나라의 대부. 이름은 수무(須無). 시호는 문(文)이다.

54) 「복서통의」 283쪽. “「士昏禮」, 問名曰: “某既受命, 將加諸卜.” 納吉曰: “某加諸卜, 占曰吉.” 【出〈記〉文】 「衛風」: “爾卜爾筮, 體無咎言.” 【此〈氓〉詩】 『左傳』, 晉獻公筮嫁伯姬. 史蘇占之, 曰: “不吉.” 【僖十五年】 崔杼欲娶棠姜, 筮之. 陳文子曰: “不可娶.” 【襄二十五年】 此婚嫁之占也.”

55) 「복서통의」 284~285쪽. “總之, 卜筮之法, 其始也. 稟天命以前民用也. 事雖正而成敗易分者, 不卜. 利雖明而義理不允者, 不卜. 唯考諸義而雖正, 其成敗利鈍有不明者, 於是乎有占也. 春秋之世, 此法已濫. 【如陳敬仲·畢萬·叔孫豹之占】 ”

찾는 것인가?”라는 물음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청명(聽命)의 뜻이 무엇이며, 내용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라는 것인데, 만일 천명을 받으려는 사안과 의미가 어둡거나, 명을 찾으려는 의지가 조급해도 안 되고, 요사한 환상의 술수 혹은 교활하고 지리한 학설에 현혹되어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하늘을 능멸하고 신을 모독하는 허물에 빠져들게 된다고 보았다.⁵⁶⁾ 따라서 그는 무엇이 옳은지, 청명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에 있어서 『예기』·『왕제』에 기록된 내용은 ‘바름’으로 삼을 만하다고 평가하였다.⁵⁷⁾

그렇다면 ‘복서’는 언제까지 시행되고, 복서의 책들은 역사적으로 언제쯤 사라졌을까? 정약용은 복서가 춘추시대만 해도 그 법식이 많이 남아 있었다고 했다. 『대전(大傳: 계사전)』에 설시법이 간략하게 남아 있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변동을 이루는 효에 관한 기록이 명문으로 남아 있지 않아서, 시초법조차도 사라졌다고 했다.⁵⁸⁾ 더불어 정약용은 복조들이 후한대까지 전해졌을 것으로 추론했는데, 그 근거는 장형(張衡)⁵⁹⁾의 『사현부(思玄賦)』를 들고 있다. 장형의 글에 복조(卜兆) 관련 기록이 보이기 때문인데, 이로써 정약용은 장형이 살았던 후한대까지 복조의 책들이 있었고,⁶⁰⁾ 조서(兆書)의 책들은 진(秦)·한(漢) 사이에 없어졌을 것이라는 추정

56) 『복서통의』 285쪽. “卜其謀議者，不揆夫義利逆順之辨。【如陽虎救鄆，南蒯將叛】稟命之義滲晦，而探命之志先躁，則眩惑妖幻之術，狡獪支離之說，得以交亂於其間，而不自覺，其陷入於慢天瀆神之咎矣。”

57) 『복서통의』 285쪽. “然苟欲筮之，須先查察，曰：“是稟命乎，是探命乎？”苟其探矣，斯速已之，斯古義也。然今人之義，當以『王制』爲正。”

58) 『복서통의』 285쪽. “揲蓍求卦之法，略見『大傳』，而其變動成爻之例，未有明文，則筮法已亡矣。法既亡，則無以爲筮。”

59) 장형(張衡, 78~139): 後漢의 文學家. 渾天儀, 地動儀를 발명한 과학사상가. 하남성(河南省) 남양(南陽) 서악(西鄂, 하남성 南召)사람. 자는 平子. 혼천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 저서로 『周官訓詁』가 있지만 전하지 않는다. 천문학 관련 저서로 『靈憲』과 『渾天儀』 『渾儀圖注』 등이 있다. 수학 관련 저서로는 『算罔論』이 있다. 주요저서는 『二京賦』, 『歸田賦』이다. 사부(辭賦)의 대표작은 『西京賦』, 『東京賦』, 『南都賦』 등이 있다. 『隋書』 『經籍志』에 『張衡集』 14권이 있으나 오래전에 없어졌다.(임종욱 편저, 『중국역대인명사전』, 이회, 2010, 1544쪽)

하였다.

귀복점의 조짐을 적은 책은 또한 오직 태복이 장악했다는 뜻이다. 항우의 화마로 드디어 복서의 책과 함께 하여 그것을 없애버렸을 뿐이다. 한나라의 제도도 여전히 복서를 금지하였다. 【『왕제』에서는 “어느 날 어느 시부터 복서로써 대중을 의혹시키는 자는 죽인다.”고 하였다.】 「설괘전」 3편도 또한 오래된 집(공자가 살던 옛집의 벽에서 고문이 나온 것)에서 얻었지만, 조서가 없어진 것은 반드시 진·한의 사이일 것이다. 장형의 사현부」에서 “아마도 서씨(筮氏)의 짧고 긴 것은 동쪽 거북을 뚫어서 상서로움을 본다. 아홉 언덕의 큰 새를 만나니, 소박한 염원이 뜻을 이루지 못함을 원통하게 생각한다. 속세 밖에서 노닐며 하늘을 힐끗 쳐다보고 어두운 그늘에 의지해 슬피 운다. 독수리와 물수리는 탐욕스럽게 다투지만 나는 수양해 정결하게 날로 영화를 더하리. 그대는 학과 연고가 있어 모씨로 돌아간 후에 평안하다. 점은 이미 길하고 후회가 없으며, 죽간은 원래대로 다하여 행장을 수습하도다.”라고 하였다. 【개(介)는 큼이다. 현조(玄鳥)는 학이다. 도는 사물의 어머니가 되므로 도를 모씨라 하면 도로 돌아감을 말하여 인성을 얻었다고 한다.】 주에는 “귀복점의 점은 학이 구교(九臯)에서 우는 조짐을 얻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근거는 장형의 시대에 오히려 복조의 책이 있었음을 말한다. 【한나라 안제 시대의 사람이다.】 61)

이로써 정약용이 주장한 복·서의 의미를 총괄해 보면, 복·서는 천명을 품부 받는 예식이고 선한 미래의 일에 대한 예지이며 천명의 올바름에 순명하는 의미가 있다. 일의 성패와 행운 또는 불운의 예측 불가능성을 인간의 도덕적 판단 기준을 토대로 올바름을 상고한 의미가 있다. 중

60) 「복서통의」 289쪽. “註云: “卜兆, 遇鶴鳴九臯之兆也.” 據此, 張衡之時, 猶有卜兆之書. 【漢安帝時人】”

61) 「복서통의」 289쪽. “卜兆之書, 亦唯太卜掌之意者. 項羽之火, 遂並卜筮書而亡之耳. 漢制遂禁卜筮. 【〈王制〉云: “假時日卜筮以疑衆者, 殺.”】 〈說卦〉三篇, 亦得之於老屋. 兆書之亡, 必在秦·漢之際也. 張衡〈思玄賦〉云: “懼筮氏之短長, 鑽東龜以觀禎. 遇九臯之介鳥, 怨素意之不逞. 遊塵外而警天, 據冥翳而哀鳴. 雕鷲競於貪婪, 我修潔以益榮. 子有故於玄鳥. 歸母氏而後寧. 占既吉而無悔. 簡元辰而儆裝.” 【介, 大也. 玄鳥, 鶴也. 道爲物母, 故謂道爲母氏, 言歸於道, 而獲安也】 註云: “卜兆, 遇鶴鳴九臯之兆也.” 據此, 張衡之時, 猶有卜兆之書. 【漢安帝時人】”

대사를 귀복점을 통해서 하늘에 명을 물을 때는 일을 계획해 의논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로운 것인지가 거스르는지 아니면 순리적인지를 분별해 헤아리지 못한 경우에 했을 뿐이었다.⁶²⁾ 정약용은 「왕제」편에 기록된 내용에서 상당부분 정당성을 찾았다.

VI. 결론

정약용은 『주역』이 본래 복서의 책임을 인식했다. ‘복과 서’는 점의 원형적 근거인 형식이자 고대인의 우환의식과 천명을 품부 받는 정성이 반영된 예식이었다. 당시엔 점치는 거복이와 시초까지 신성한 기물로서 존숭되었다.

정약용은 『의례』 3편을 고증하고 ‘복서의 의미’가 ①청명(聽命) ②통치 ③미래예측 및 가치판단의 문제와 관련되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표기」에 기록된 ‘복서지의’는 하늘의 명을 청명(聽命)하려는 예식이다. 둘째, 「곡례」에 기록된 ‘복서지의’는 성왕이 백성으로 하여금 시일을 믿게 하고 귀신을 공경하게 하며 법령을 두려워하게 만들려는 통치적 의미가 있다. 복서를 백성에 앞에서 천명을 품부 받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뜻이다. 셋째, 「소의」에 기록된 ‘복서지의’는 두 번 묻지 않으며, 옳은 일에 관해서만 복서를 행한다고 했다. 일이 바를지라도 성패가 쉽게 구분되면 귀복점을 치지 않았다. 성패와 행운 또는 불운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점을 쳤으며, 이익과 명예를 위해는 점을 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이 인식한 ‘복서지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신을 섬기지 않으면서 일을 당해서 귀복점과 시초점을 시행하는 것은 하늘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둘째, 사술에 빠진 복서는 의미가 없다. 셋째,

62) 『左傳』: “昭公十二年, 南蒯是魯國季孫氏的家臣, 幫忙掌管費邑這個地方. 季平子立為季孫氏宗主之後, 主掌了魯國的國政, 但對於南蒯很不尊重. 南蒯則仗著他老爸南遺對季孫家的功勞, 而忿忿不平, 於是打算謀反.”

을바름이란 천리를 헤아려 합하는 것이다. 합당한 것을 예지하려는 것이 복서이다. 따라서 위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복서는 폐지될 수밖에 없다. 넷째, 『예기』·『왕제』에 기록된 ‘복서의 의미’가 바르다고 할 만하다.

「복서통의」는 정약용이 복서의 예법과 의식 절차, 점치는 방법, 그 마음가짐과 태도를 중국문헌을 통해 고증한 역학비평론이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복례와 서례의 기록 및 고대인의 의식과 마음가짐을 연구한 ‘복서지의’가 규명되어 있다. 따라서 「복서통의」는 『역학서언』의 총 21편 가운데 유학자 정약용의 고대의 ‘복서에 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역학비평론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李相玉 譯著, 『禮記』 上,中,下, 명문당, 2012.
- 池載熙, 李止漢 解譯, 『儀禮』, 자유문고, 2004.
- 丁若鏞, 『易學緒言』(『定本 與猶堂全書』 제17권),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 고형 주해, 김상섭 옮김, 『고형의 주역』, 예문서원, 1995.
- 고형·이경자·용조조 지음, 김상섭 편역, 『주역 점의 이해』, 지호, 2009.
- 김상섭, 『내 눈으로 읽은 주역』, 지호, 2006.
- 임종욱 편저, 『중국역대인명사전』, 이회, 2010.
- 정병석, 『점에서 철학으로』, 동과서, 2014.
- 김성기, 「역경철학 중 占 占 占 관념의 변화연구」,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제76호, 2015.
- 금장태, 「정약용의 “易”해석에서 卜筮의 방법과 활용」, 『다산학』 제8호, 2006.
- 김정각, 「주희역학에서의 점복과 도덕의 관계에 관한 연구-역경의 원형이정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공자학회, 『공자학』 제31호, 2016.
- 방 인, 「다산역의 천명관 請命, 稟命 그리고 順命」, 다산학술문화재단, 『다산학』 제26호, 2015.
- 신성수, 「卜筮와 『易』의 관계에 관한 연구-『周禮』·『書經』·『周易』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어문교육』 제39권, 2011.
- 정병석, 「주역의 원류와 龜卜·龜卜에 나타난 우주관과 兆象의 해석 문제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회, 『동양철학연구』 제31집, 2002.
- 정병석, 「聖人之書와 卜筮之書의 사이-새로운 출토자료를 통해 본 『주역』의 형성 문제」, 동양철학연구회, 『동양철학연구』 제42집, 2005.
- 신원봉, 「정약용의 점서적 역학관 연구-주희와 모기령 비교」, 다산학술문화재단, 『다산학』 제25호, 2014.

A study on the Cognizance of Jeong Yag-yong's *Bushi* in the 「*Bushitongyi*」

Nan-sook, Lee (Kangwon National Univ.)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analysis of Jeong Yag-yong (1764-1836)'s cognizance of 'Bu(卜)' and 'Shi(筮)' recorded in the 『*Yeokhakseoeon*(易學緒言)」·「*Bushitongyi*(卜筮通義)」. 「*Bushitongyi*」 is a theory of yixue-criticism composed of eight topics. The contents of the 「*Bushitongyi*」 are discussed focusing 『*Yili*(儀禮)」, 『*Liji*(禮記)」 and related references are comprising 『*Chunqiuozhuan*(春秋左傳)」, 『*Zhouli*(周禮)」, 『*Guoyu*(國語)」, 『*Erya*(爾雅)」, 『*Shijing*(詩經)」, 『*Shujing*(書經)」 and 『*Zhouyibenyi*(周易本義)」 were also studied.

Jeong Yag-yong discussed the ceremonial procedures and regulations of Divination by a turtle and Divination by a shicao(蓍草) documented in 『*Yili*」·「*Guanli*(冠禮)」 and 「*Sangli*(喪禮)」. Moreover, Jeong Yag-yong also discussed the significance of 'Bushi' in three volumes entitled 「*Biaoji*(表記)」 of 『*Liji*」, 「*Quli*(曲禮)」 and 「*Shaoyi*(少儀)」. Furthermore, Jeong Yag-yong analyzed the cases of Divination by a turtle and Divination by a shicao in the history of China mentioned in 「*lingshici*(令蓍辭)」 and 「*buzhaoyao*(卜兆繇)」. Hereby, he has also been studied the comprehensive meaning of 'Bushi' According to Jeong Yag-yong, the meaning of '*Bushi*' is related to the questions of Fairness, governance and future prediction and judgement on values. Firstly, the '*Bushi*' is a ritual ceremony to attend the heaven's order. Secondly, the '*Bushi*' signifies the King's administration considering the allotted span in the presence of subjects. Thirdly, the '*Bushi*' does not ask twice and it only acts in

accordance with the righteousness.

The viewpoints of Jeong Yag-yong about the ‘*Bushi*’ are as follows:

- Firstly, acting on the Divination by a turtle and Divination by a *shicaoto* to combat the problems arising due to not serving the God of heaven is an action of unhallowing the God of heaven. Secondly, the ‘*Bushi*’ influenced by the inappropriate trick is worthless. Thirdly, righteousness is the measure to reckon the law of nature. If the above conditions are not congregated, the ‘*Bushi*’ must be abolished. Fourthly, the meaning of ‘*Bushi*’ recorded in 『*wangzhi*』 is correct analysis.

There are 450 types of *yici*(易詞) in 『*Zhouyi*』. However, Jeong Yag-yong’s foretelling phrases of the three style omen(三兆: 玉兆, 瓦兆, 原兆) are three times greater. Jeong Yag-yong made an assumption of that books of *buzhao*(卜兆) disappeared between the Qin and Han dynasty.

『*Zhouyi*』 is primarily a book of ‘*Bushi*’(卜筮). Jeong Yag-yong recognized the overall significance of 『*Zhouyi*』. In 『*Bushitongyi*』 and explained the archetypal basis of the ‘*bu*’ and ‘*shi*’ through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ceremonial procedures and regulations with historical references.

Key words: Jeong Yag-yong, 『*Yeokhakseoeon*』, 『*Bushitongyi*』, *Bushi*,
Viewpoint of *Bushi*

「卜筮通義」에 담긴 정약용의 「卜筮」에 관한 인식 / 이난숙

이난숙 E-mail: lns88@naver.com

투 고 일	2018년 10월 14일
심 사 일	2018년 10월 29일
게재확정	2018년 11월 15일